

『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
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외 8건의 일본식 한자어 사용조례 개정
 - 불입 → 납입
 - 지참 → 지각
 - 납골당 → 봉안당
 - 부락 → 마을
 - 구좌 → 계좌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
-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수정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